

[별지 제18호서식]

(표면)

제	호	수 의 약 사 감 시 원 증		
소	속			
직	위			
성	명	년	월	일생
위의 사람은 수의약사감시원임을 증명함				
년 월 일				
농림부장관				
서울특별시장 (성명) [인]				
부 산 시 장				
도 지 사				

(이 면)

표기자는 약사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검 또는 수거를 할 권한을 가진자
임.